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. 9. 27 선고 2022가단541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9. 27.

주 문

1.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9. 1. 16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. 1. 16. 접수 제15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강문희

별지